

제1회 ARKO 청년 소논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새로운 문화예술 기부 유형으로서의 저작권 기부

- 재능 기부를 기반으로 한 저작권 기부의 이점과 실현성

최윤석 · 홍수민

목 차

제 1 장 서론	5
1. 배경 및 목적	5
2. 주제 의식	5
제2장 재능 기부의 정의와 확산	5
1. 재능 기부의 정의	5
2. 재능 기부의 확산	6
3. 대표적인 재능 기부 사례	6
가. 박이슈 코리아	6
나. 네이버 재능 기부 블로그	6
4. 재능 기부 정책의 사회적 효과	7
제3장 저작권 기부의 개념과 현행 저작권법	8
1. 저작권 기부의 개념	8
2. 저작권의 정의	8
3. 저작권의 요소와 주요 권리	9
4. 저작권의 내용	10
가. 저작 인격권	10
1) 공표권	10
2) 성명 표시권	11
3) 동일성 유지권	11
나. 저작 재산권	11
다. 저작 인접권	11
5. 저작권 보호기간	12
가.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한정적인 이유	12
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기간 규정	13
다.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	13
라. 저작 인격권의 보호기간	13
6. 저작 재산권의 양도	14
제4장 저작권 기부의 사회적 효과와 사례	14
1. 저작권 기부와 재능 기부의 차이	14
2. 저작권 기부의 사회적 효과	14
3. 대표적인 저작권 기부 사례	15
가. 아름다운 재단과 인세 기부	15
1) 인세 기부	15

2) 1% 나눔	15
3) 나눔의 책	18
나. 그 외 사례	21
제5장 저작권 기부에 대한 제도 및 재단 형성의 사례	21
1. 저작권에 대한 현행 제도와 사회적 기업	21
가. 저작권 기부와 관련한 현행 제도	21
나. 사회적 기업 및 재단	24
2. 저작권 관련 재단의 해외 사례	24
가.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24
나. Getty Foundation	26
다. Poetry Foundation	29
3. 국내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30
제6장 결론	30
참 고 문 헌	31

표 목 차

<표 1> 2011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기간 개정 내역	13
--------------------------------------	----

그림 목차

[그림 1] 네이버 재능 기부 블로그 목록	7
[그림 2]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12
[그림 3] 아름다운재단의 월별 총 기금 현황	16
[그림 4] 아름다운재단 2009년 나눔의 책 참여 출판사	19
[그림 5] 아름다운재단 2009년 나눔의 책 참여 작가	20
[그림 6] 공공 저작권 신탁관리 센터 업무	22
[그림 7] 공공 저작권 위탁 기관 모델	23
[그림 8] 기부 저작권 위탁 기관 모델	23
[그림 9]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기증 페이지	23
[그림 10] The Andy Warhol Foundation Year Anniversary Report 문화 지원 금액	25
[그림 11] The Andy Warhol Foundation Year Anniversary Report 문화 지원 금액	26
[그림 12] 2009 Getty Foundation 회계 보고 대차대조표	27
[그림 13] 2010 Getty Foundation 회계 보고 대차대조표	28
[그림 14] 2009 Getty Foundation 대차 대조표 attachment 3 추가 수입 로열티	29
[그림 15] 2010 Getty Foundation 대차 대조표 attachment 1 추가 수입 로열티	29

I. 서론

1. 배경과 목적

현재 국내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별다른 기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에 주시하여,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재능 기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기부 방식인 저작권 기부의 이점과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 관련 정책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그 실현성을 알아보고 경제적 실효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2. 주제 의식

논문은 단순히 저작권 기부에 대한 개념만을 살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차원 이상의 시각에서 저작권 기부를 비정부기구(NGO) 또는 비영리단체(NPO)에 접목시킴으로써 확고히 기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것이다. 해외의 저작권 관련 재단 현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의해 볼 것이다.

II. 재능 기부의 정의와 확산

1. 재능 기부의 정의

‘자선’은 전통적 차원의 나눔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심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윤리적 동기에 의한 동정, 은혜 등을 총칭한다.¹⁾ 이와 다르게 ‘기부’는 법적 용어인 ‘증여’²⁾ 개념에 속한다. 기부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무언가를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도적으로 인정된 방식이나 조직을 통해 기부 품목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이다. 기부는 현금, 금품, 부동산, 신체의 일부(헌혈 등)를 기부하는 ‘유형의 기부’와, 시간과 재능, 기술을 나누는 자원봉사인 ‘무형의 기부’로 분류된다.

이 중 재능 기부(Talent Donation)는 무형의 기부로서의 자원봉사이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그 중에서도 재능 기부는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가 아닌 ‘재능’이라는 특수한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이며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개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재능 기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

1) 이철수 저, 『사회복지학 사전』, 블루피쉬, 2009. 08. 15.

2) 증여자인 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인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54조)

운 형태의 기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능 기부를 Skilled Volunteer로 정의하는데, 이는 재능 기부가 자원봉사의 일환임을 분명히 한 동시에 이를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차별화하여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을 활용한 자원봉사로 특화시킨 개념이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재능 기부에서의 재능은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교환, 환산 가능한 직무들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재능 기부는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재능의 범위를 전문적 업무능력에서 일상적 차원의 노동력 제공까지도 확대시키고 있다.

2. 재능 기부의 확산

최근 들어 재능 기부는 온라인 매체의 대중화로 인해 더욱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명인에 의한 재능 기부가 많이 알려져 있고 일반인의 재능 기부에 비해 파급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효과가 크지만, 일반인에 의한 재능 기부 사례도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것이 비영리단체나 조직의 설립으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들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 소외층에 대한 재능 기부를 실천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는 “우리가 개인화되면서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능 기부도 그 중의 하나”라며, “재능 기부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는 재능 기부가 전문가에서 일반인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³⁾ 이는 소설가 김영하가 자신의 재능 기부 블로그를 통해 시사한대로, 자신의 재능을 생계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기부자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울 수 있으며 그것이 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능 기부의 특성은 금전적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에 부담을 느꼈던 이들에게는 또 다른 사회참여의 방법을 제공하는 셈이 되며, 기부자의 재능까지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재능 기부는 여러모로 기부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을 지닌다.

3. 대표적인 재능 기부 사례

가. 빅이슈 코리아

자립을 원하는 홈리스(Homeless)가 거리에서 독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판매하는 《빅이슈(Big Issue)》는 1991년 영국에서 창간된 대중문화잡지로, 홈리스에게 잡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자활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만 5,500명이 《빅이슈》를 판매하며 자립에 성공하였다.

한국에서는 2010년 7월에 《빅이슈 코리아》의 판매가 시작되었다. 현재 세계 10개국(영국,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대만, 한국 등)에서 14종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INSP(세계거리신문잡지협회) 40개국 112개 회원사와 콘텐츠를 공유하여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빅이슈》는 주로 유명 인사들과 각계 전문가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나. 네이버 재능 기부 블로그

3) 위클리 경향 894호 [특집]재능 기부 우리 곁에 '성큼', 최영진 기자, 2010. 10. 05

유명 문화예술인이 블로그를 통해 재능을 나누면 이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해피빈 콩을 모아 기부로 완성하는 캠페인으로 재능 기부자가 자신의 재능이 담긴 콘텐츠를 나누고, 공감하는 블로거들로부터 받은 콩으로 기부를 실천한다.4)

[그림 1] 네이버 재능 기부 블로그 목록

	<p>Story 11 박문성 축구해설가 축구해설가 박문성의 꿈을 향한 여시스트</p>		<p>Story 10 이효리 가수 이효리의 감미로운, 고요함을 부탁해!</p>		<p>Story 09 김지은, 최대현, 김정근 외 이나운서</p>
	<p>Story 08 설도윤 뮤지컬 프로듀서 프로듀서 설도윤의 뮤지컬에 인생을 건 남자</p>		<p>Story 07 강우석 영화감독 영화감독 강우석의 영화인생</p>		<p>Story 06 에드워드 권 요리연구가 요리사 에드워드 권의 쿠킹레터</p>
	<p>Story 05 박칼린 음악감독 음악감독 박칼린이 보내는 편지</p>		<p>Story 04 김문제 과학자 나노 과학자 김문제의 미래뉴스</p>		<p>Story 03 이상은 가수 가수 이상은의 음악선물</p>
	<p>Story 02 김명하 작가 작가 김명하의 스토리특급</p>		<p>Story 01 노희경 드라마 작가 노희경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p>		

4. 재능 기부 정책의 사회적 효과

재능 기부가 일반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비해 갖는 이점은 첫째, 개인의 능력을 존중해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 둘째,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다양한 만큼 기부할 수 있는 재능도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셋째, 여러 유형의 기부 형태를 갖는 문화예술분야 기부가 일회적인데 비해 재능 기부는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재능 기부의 이점은 기부와 봉사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확장시키며 나아가 대중으로 하여금 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재능 기부는 일반 자원봉사보다 한 단계 진화한 기부 모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재능 기부는 기존의 문화예술 향유가 '소비'를 매개로 해서 실현되는 측면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대안적 방법이기도 하다. 문화예술 향유가 곧 문화예술 소비인 상황에서는 문화예술 향유에서의 소비능력 즉 경제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나, 문화예술 향유가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과 '공유'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제한하는 경제적 격차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이처럼 문화예술분야 재능 기부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이자 촉매가 될 수 있다면, 문화예술분야의 시장과 소비를 확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소비자 트렌드가 '착한 소비'나 '윤리적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만큼 기업에서도 착한 경영이나 윤리적

4) [그림 1] 네이버 재능 기부 블로그 페이지 <http://section.blog.naver.com/talentdonation/TalentDonationTotalList.nhn>

경영을 기업 이미지 및 상품 이미지 제고의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문화예술분야의 재능 기부는 단순히 재능 기부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는 곧 재능 기부가 단지 기부의 단계로 끝나지 않고, 대중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재고 및 소비 증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재능 기부를 문화예술정책 전반의 큰 방향인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분야 창작 지원 및 활성화를 지향하여 지원하고, 재능 기부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 및 소비를 활성화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재능 기부를 일종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로 만듦으로써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시킴으로써 문화예술분야의 창작지원과 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재능 기부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각 정부부처에 의한 재능 기부 정책은 보편적 차원에서 기존 자원봉사의 범주를 유지한 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문화예술분야의 비중이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이 사회복지라는 틀 내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의 재능 기부가 갖는 독립적인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⁵⁾

Ⅲ. 저작권 기부의 개념과 현행 저작권법

1. 저작권 기부의 개념

앞서 설명한 재능 기부는 진화된 문화예술분야 기부 유형으로서 문화예술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일반 기부 형태보다 지속적이며 역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이러한 재능 기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저작권 기부는 재능 기부가 갖는 이점을 모두 이어나가면서도 전혀 다른 유형의 기부라는 것이 그 특징이다.

저작권 기부는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특수한 경제적 자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이것이 전문적인 문화예술 재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형의 기부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재능 기부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기부가 기반을 두고 있는 저작권의 개념과 현행 저작권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2.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여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인격적 이익과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다.

5) 박소현 저, 「문화예술분야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현행 한국 저작권법 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발전에 이바지, 창조적 저작 행위를 장려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기본 이념이 정신적인 영역에 정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에 있어 저작물 자체 표현의 형식 또는 방법이 보호된다는 뜻이지 저작자의 사상이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또한 창작성 보다는 미디어, 구체적인 용역, 제품에 등 어떤 구체적인 가치를 보호하려는 자본주의의 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저작물은 다른 생산물과 달리 정신적 산물이고 그런 점에서 현대 사회 문화 예술 창작 영역의 주된 장이자 직접적 구성물이다. 인류가 쌓아온 여러 문화생산물들은 재산 가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효용의 틀에서 보면 공공재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는 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적 생산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함께 넓어진다. 현대 사회의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는 개인의 콘텐츠 소비를 증가시켰으며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의 공유와 확산에 대한 방법과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 국가 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이다.

3. 저작권의 요소와 주요 권리

넓은 의미에서의 저작권은 저작권, 저작 인접권, 데이터베이스 등의 권리로 세분화된다. 저작권의 핵심 요소는 창작성의 여부와 유체물체의 고정여부이다. 전자인 창작성은 기존의 다른 것을 복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기원이 저작자에게 있고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닌 최소한의 독창성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은 유체물체의 고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외부에서 어떤 것이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표현되었을 때에 저작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상저작물은 유체로 고정된 것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속성으로 첫째, 저작권은 무체 재산권이다. 무체 재산권은 유형의 재산권과 대비된다. 동산 또는 부동산처럼 유형물에 대한 권리와 달리 저작물은 인간 정신의 산물로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형체를 반드시 가지지 않는다. 저작물과 미디어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은 무형의 재산으로 대상화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무형의 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곧 저작권이다. 따라서 저작물은 다른 정보와 마찬가지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저작물의 가장 두드러진 경제적 특성으로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을 꼽는다.

둘째, 저작권은 시간적인 한계를 가진 권리이다. 유형적 재산은 그 권리대상이 되는 물건이 존속하거나 다른 사람의 취득 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그 저작권이 존속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법률로 정해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에 속하게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을 가진 자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엄격히 말해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거나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그러나 저작권은 독창성이 요건이지 신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산업 재산권과 달리 모방 금지권 정도의 상대적인 배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사전 허락에

대해서도 발전하는 뉴미디어 매체 환경 아래서는 법적인 재검토와 재해석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넷째,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이다. 저작권은 초기에 복제권과 출판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로부터 출발했으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을 포함하는 공중 송신권,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저작물의 주문 전달에 관한 전송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여러 가지 권리를 한 뭉치로 묶어 일정한 방식으로 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이용의 허락이나 양도도 이들 권리를 각각 나누어 행할 수도 있고 묶어서 한 덩어리로 할 수도 있다.

4. 저작권의 내용

가. 저작 인격권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의 복제 등과 같은 경제적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인 지적 재산권과 대비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라는 병존하는 별개 권리의 복합체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저작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 보는 것이 통설인데 고유의 일반적 인격권인 생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과 비교하여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법 조항에 의한 저작 인격권의 내용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목적의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양도 이전 상속되지 않으며 실연자의 인격권도 이와 같으나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한 한도를 두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저작권법 제 14조 제 2항).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유의 인격권은 인간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임에 비해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둘째, 고유의 인격권은 권리 주체의 인격에 대한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임에 비해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으로부터 독립된 저작물이다.

셋째, 일반적 인격권은 권리주체의 인격에 대한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임에 비해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저작 인격권은 크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의 세 종류로 나뉜다.

1) 공표권

공표권은 저작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 저작물의 공표 여부, 공표의 시기, 공표의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표권의 객체는 미공표 저작물에 해당된다. 법 조항에 의한 공표권의 내용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공표에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표와 발행이 포함된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 2조 제 25호).

이를 쉽게 정리하자면, 공표권이란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공표할 때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 공표의 시기를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2) 성명 표시권

성명 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할 때 공표 매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제 12조 제 1항).

저작물에서 저작자 성명을 표시하는 이유는 그 내용에 대한 책임과 평가의 주체가 누구임을 명확히 하고 공중에게 저작자와 저작물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성명 표시권은 공명에권이기도 하다. 성명 표시권에는 저작물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 및 무명 공표권이 모두 포함된다. 무명 저작물에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은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자의 성명 또는 칭호를 변경 표시 또는 은닉하거나 표시된 성명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삭제하면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된다. 원저작물에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도 동일성이 인식 또는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볼 수 있고 복제물을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하면 원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한편 저작물의 원작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 성명 표시가 없으면 발행자등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저작자는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등에 있어서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울러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에 대해 실명 등록의 권리를 갖는다(제 53조). 또한 저작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그것을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3) 동일성 유지권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제 13조 제 1항). 즉 내용이나 형식은 물론이고 표제나 타이틀 등을 무단 변경 절삭 개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하므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원작을 무단 변경하여 원작보다 내용 형식 등이 개선되었다고 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나. 저작 재산권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이다.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저작 재산권은 7가지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권리가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권리만이 분리 양도 이전이 가능하다. 저작 재산권을 크게 나누면 작성권과 공중 전파권으로 대별된다. 작성권에는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2개 권리가 있고 공중 전파권에는 유형적인 것으로 배포권과 대여권의 2개 권리 무형적인 것으로 공연권 공중 송신권과 전시권의 3개 권리가 해당된다. 각종의 저작 재산권은 개별 저작권이어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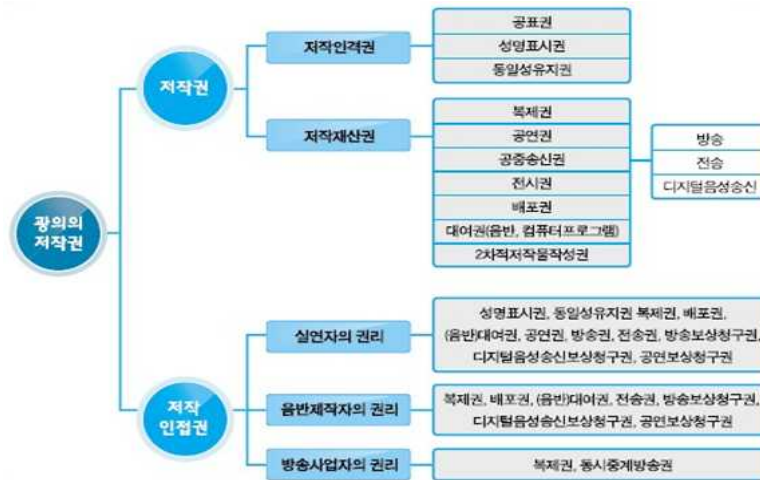
다. 저작 인접권

저작 인접권은 미디어 콘텐츠 전달자가 갖는 권리이다.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 제

작자 및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특정의 권리를 말한다. 이들은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또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신장시키기 때문에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 인접권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과 유사하게 그 대상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 인접권자 및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그림 3]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자료 : 『2009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5. 저작권 보호기간

가.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한정적인 이유

저작권은 소멸되지 않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유체의 재산처럼 권리의 대상이 존재할 때까지 권리를 보호한다면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영속되어 문화의 공유에 지장을 주게 된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든 관계로 이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높아지고 상속 등으로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거나 저작권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이용허락을 받는데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저작물은 문화적 생산물로서 가능한 빨리 사회적 공유가 이루어져야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저작물은 정보적 재화로서 다른 소비와 비경합적이고 공익을 고려해야 할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보상과 함께 공중의 사회적 수요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유형물과 달리 보호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는 저작권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공유로 두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 저작자와 이용자를 모두 보호하려는 것이 여러 나라의 공통적인 입법취지이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세계적으로 연장 추세에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의 출현 이후 저작권 보호보다 출판인 보호에 맞춰져 출판인의 이권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게 되면서 계속하여 더욱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기간 규정

1957년 우리나라에서는 첫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사후 30년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나 1986년 개정 시에 이를 50년으로 연장하고 저작 인접권을 분리하여 20년의 보호 기간을 부여했다가 1994년 개정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도 기산일로부터 50년으로 연장했다. 이어서 2008년 10월 제출된 한미 FTA 협상이 이행법률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1년에 통과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 논란이 많았지만 문화부는 이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히며 저작권 연장이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표 3> 2011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기간 개정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실명의 저작물	50년	70년 <개정 2011. 6. 30.> 시행일 : 2013. 7. 1. (제 39조)
공동 저작물	50년	70년 <개정 2011. 6. 30.> 시행일 : 2013. 7. 1. (제 40조)
무명 이명 저작물	50년	70년 <개정 2011. 6. 30.> 시행일 : 2013. 7. 1. (제 41조)
업무상 저작물	50년	70년 <개정 2011. 6. 30.> 시행일 : 2013. 7. 1. (제 42조)
영상 저작물	50년	70년 <개정 2011. 6. 30.> 시행일 : 2013. 7. 1. (제 43조)

다.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이 발효됨에 따라 저작 재산권 보호 기간에 대한 조항 또한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 간 존속하던 저작 재산권이 공표 시기와 상관없이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 또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간 보호된다(제 39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 기간 또한 70년 간 보호되며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 40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은 39조 40조에 상관없이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다만 창작한 내에 50년간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간 존속한다.

라. 저작 인격권의 보호기간

저작인격권의 존속 기간은 저작권법 상 규정이 없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자 사망으로 저작 인격권은 일단 소멸한 것으

로 보지만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금지청구 명예 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저작 재산권의 양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제 3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대해 다루고 있다(제 45조 제 1항). 저작재산권은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제 45조 제 2항 본문). 반면 저작 재산권이 아닌 저작 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다(제 14조).

저작 재산권을 제 3자가 아닌 국가에 기증하고 싶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135조 제 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하면 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 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 135조 제 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한다. 기증자는 저작권을 기증하기 위해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 68조 제 3항, 제 75조 제 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 28조 및 별지 제 59호 서식).

현재 저작권 기부는 이와 같은 저작권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기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저작 재산권 양도 관련법을 따르며, 양도 이후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의 저작 인격권을 지키고, 그에 따른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지켜진다.

IV. 저작권 기부의 사회적 효과와 사례

1. 저작권 기부와 재능 기부의 차이

재능 기부와 저작권 기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강한 ‘무형의 기부’인 재능 기부와는 달리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출판물의 인세 및 음원 수익금 등을 기부하는 저작권 기부는 ‘유형의 기부’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기부자가 본인의 시간과 재능을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화가 가능한 경제적 자산을 기부한다는 것이다.

2. 저작권 기부의 사회적 효과

앞서 설명하였듯 저작권 기부는 문화예술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일반 기부 형태보다 지속적이며 순환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재능 기부의 이점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저작권 기부의 사회적 효과는 재능 기부가 갖는 이점의 한계를 넘어선다.

우선 재능 기부에서의 기부물인 재능은 유체물로 재능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재능 기부를 이

어나간다하더라도 그의 사후엔 역시 기부가 단절된다. 반면, 저작권 기부에서의 기부물인 저작권은 무체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 동안 계속 기부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소급 보호법에 의해 최소 70년간의 지속적인 기부 수입을 보장한다. 이는 저작권 기부가 재능 기부보다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또한 이는 저작자가 생전 자신의 재산에 대한 희생 없이 사후 유작을 기부하는 형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문화예술인에게 기부대상은 곧 자신의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접적인 재능 기부나 저작권 기부를 꺼렸던 사람들에게도 이는 새로운 기부의 기회가 된다. 따라서 저작권 기부는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환원과 기부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닌다.

저작권 기부의 가장 큰 이점은, 재능 기부와 마찬가지로 '착한 소비'에 대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으나 이것이 재능 기부보다 마케팅적으로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저작물에 지불하는 돈이 직접적으로 기부되기 때문에 저작권 기부는 소비자들의 쉬운 기부를 도와 구매 욕구를 자극하며, 저작물의 홍보에도 더 효과적이다. 또한 이는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양심적 거부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기부는 재능 기부와 달리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환원이다. 재능 기부자가 일방적으로 수혜자에게 문화예술적 혜택을 제공하는 재능 기부와는 달리, 저작권 기부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로 기부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주체는 대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에서 시민에게 이루어지는 쌍방향적인 기부 방식은 빈부격차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소비가 곧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3. 대표적인 저작권 기부 사례

가. 아름다운 재단과 인세 기부

1) 인세 기부

인세 기부는 책 출판 시 작가에게 전달되는 인세 중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2001년 시작된 아름다운 재단의 1% 기부 중 세부 항목으로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총괄상임이사가 출발점이 되었다. 아름다운 재단의 나눔의 책 프로그램 또한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인세기부 운동을 하고 있다.

2) 1%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1%는 나눔의 시작으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1% 나눔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으로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아름다운 재단 측에서 설명하고 있다. 1% 나눔의 참여자들은 생활 속에서 나눔 대상을 정한다. 1% 나눔은 월급, 연봉, 생활비, 용돈, 나눔의 가게, 등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나눔 대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인 공연자 작가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의 지식과 능력 나눔 또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 나눔 시민 모금가 등 일

상에서 스스로가 기획하고 모금하고 행동하는, 기부자들이 만드는 시민 주도형 모임이다. 이 모임은 현재 4만 8천명의 기부자가 참여하고 있고 1%의 기금으로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참여 계층의 다양화로 기부 방식의 다양성과 창의성 면에서 참여자의 정기적 기부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기부 형태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림 4] 아름다운재단의 월별 총 기금 현황

2011년 9월 총기금현황

기금명	2011년 9월			
	모금	사업수입	배분	잔액
사업기금 합계	522,888,631	-	140,945,416	35,993,301,114
소 계(공익파대안)	164,900,046	-	69,008,913	10,761,099,135
공익인프라1%기금	15,126,870			682,424,213
내일을위한기금	370,000			1,059,074,442
한국그린포스럼프마중물기금				1,777,104
탁아기금	1,248,000			113,265,445
1%기금	95,040,586		37,397,795	6,594,552,873

2011년 8월 총기금현황

영역구분	기금명	2011년 8월			
		모금	사업수입	배분	잔액
총 계		670,834,634	-847,000	515,251,485	38,563,306,258
사업 현금기금 합계		633,114,134	-847,000	335,238,963	32,923,639,272
소 계(공익파대안)		230,005,725	-	47,116,737	10,678,321,548
	공익인프라1%기금	15,716,466			668,533,182
	내일을위한기금	396,000			1,058,734,042
	한국그린포스럼프마중물기금				1,777,104
	탁아기금	1,258,000			112,117,285
	1%기금	94,215,261		6,627,420	6,544,087,110

2011년 7월 총기금현황

영역구분	기금명	2011년 7월			
		모금	사업수입	배분	잔액
총 계		701,603,021	289,768,000	447,892,616	40,804,221,277
사업 현금기금 합계		593,929,621	289,768,000	297,297,390	35,047,477,776
소 계(공익파대안)		158,476,009	-	32,615,080	10,515,207,461
	공익인프라1%기금	16,761,794			654,088,987
	내일을위한기금	366,000			1,058,369,722
	한국그린포스럼프마중물기금				1,777,104
	탁아기금	1,393,000			110,959,925
	1%기금	97,007,355		3,745,900	6,464,657,777

2011년 6월 총기금현황

영역구분	기금명	2011년 6월			
		모금	사업수입	배분	잔액
총 계		881,653,227	906,844,300	406,856,271	40,332,434,933
사업 현금기금 합계		870,496,027	906,844,300	250,772,436	34,505,842,394
소 계(공익과대안)		155,624,457	-	55,775,463	10,402,202,699
	공익인프라1%기금	16,437,870			638,709,659
	내일올위한기금	426,000			1,058,033,002
	한국그린포스텀프마중물기금				1,777,104
	탁아기금	1,404,000			109,678,445
	1%기금	94,065,437		9,365,033	6,379,267,906

2011년 5월 총기금현황

영역구분	기금명	2011년 5월			
		모금	사업수입	배분	잔액
총 계		814,932,891	497,463,000	890,466,740	38,950,793,677
사업 현금기금 합계		766,971,411	497,463,000	790,640,882	32,897,573,538
소 계(공익과대안)		167,085,699	-	77,798,437	10,314,811,147
	공익인프라1%기금	18,430,412			623,577,900
	내일올위한기금	355,000		5,070,000	1,057,641,082
	한국그린포스텀프마중물기금				1,777,104
	탁아기금	1,268,000			108,386,685
	1%기금	92,781,027		35,840,000	6,302,110,717

2011년 4월 총기금현황

영역구분	기금명	2011년 4월			
		모금	사업수입	배분	잔액
총 계		621,543,381	204,156,950	645,153,181	38,528,864,526
사업 현금기금 합계		615,701,881	204,156,950	491,035,142	32,331,986,168
소 계(공익과대안)		157,180,174	-	49,278,371	10,238,958,438
	공익인프라1%기금	16,090,030			606,653,128
	내일올위한기금	366,000		9,900	1,062,384,482
	한국그린포스텀프마중물기금				1,777,104
	탁아기금	1,393,000			107,220,125
	1%기금	94,252,354		10,057,320	6,252,626,642

2011년 3월 총기금현황

영역구분	기금명	2011년 3월			
		모금	사업수입	배분	잔액
총 계		679,690,018	40,000	381,428,516	38,343,366,456
사업 현금기금 합계		672,443,118	40,000	245,530,478	31,939,304,748
소 계(공익과대안)		181,368,273	-	43,753,757	10,143,802,323
	공익인프라1%기금	20,829,480			591,825,617
	내일올위한기금	446,000			1,062,057,662
	한국그린포스텀프마중물기금				1,777,104
	탁아기금	1,338,000			105,938,565
	1%기금	102,952,683		7,443,727	6,175,976,349

2011년 2월 총기금현황

영역구분	기금코드	기금명	2011년 2월					
			모금	사업수입	전입	전출	배분	잔액
총 계			568,673,689	840,000	56,471,327	56,471,327	870,309,856	38,038,598,660
사업 헌금기금 합계			559,389,689	840,000	-	56,151,215	737,452,356	31,692,718,426
소 계(공익과대안)			170,862,565	-	-	12,994,906	44,433,270	10,019,649,450
공익과대안	859	공익인프라1%기금	16,782,465			1,354,240		572,693,125
공익과대안	5	내일을위한기금	391,000			31,280	962,940	1,061,647,342
공익과대안	682	한국그린포스컴프마중물기금						1,777,104
공익과대안	101	탁아기금	1,368,000			109,040		104,707,605
공익과대안	1	1%기금	100,626,350			7,984,664	4,348,049	6,088,148,857

2011년 1월 총기금현황

영역구분	기금코드	기금명	2011년 1월					
			모금	사업수입	전입	전출	배분	잔액
총 계			699,249,591	-	111,787,379	111,787,379	794,096,300	38,339,394,827
사업 헌금기금 합계			645,091,291	-	-	111,540,963	623,988,806	31,926,092,308
소 계(공익과대안)			179,447,838	-	-	14,830,499	25,494,650	9,906,215,061
공익과대안	859	공익인프라1%기금	19,028,770			1,721,566		557,264,900
공익과대안	5	내일을위한기금	1,061,000			96,980		1,060,324,682
공익과대안	682	한국그린포스컴프마중물기금						1,777,104
공익과대안	101	탁아기금	1,370,000			110,000		103,448,645
공익과대안	1	1%기금	98,812,008			8,180,465	1,550,026	5,991,166,122

자료 : 아름다운재단 공식 홈페이지

총 기금 현황 표를 보면, 아름다운재단의 여러 기부 프로그램 중 ‘공익과 대안’ 내에서 1% 기부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름다운재단 내의 전체 기금 현황 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나눔의 책

<나눔의 책>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재단의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다. <나눔의 책>은 작가의 인세와 독자의 책값의 일정 비율이 기부가 되는 쌍방향적 사회 환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나눔의 책>은 2001년 박원순 변호사가 쓴 <일본 시민사회 기획>을 시작으로, 2009년 <나눔의 책>에는 그 해 출간된 김병용 작가의 <길 위의 풍경>, 김용택 시인의 <수양버들> 등 25명의 작가, 31권의 책, 5곳의 출판사가 함께 하였으며 모두 54,284,880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나눔의 책>의 대표적인 기부자로는 소설 <엄마는 부탁해>로 잘 알려진 신경숙 작가가 있다. 그녀는 2001년부터 인세기부를 시작하였다. 소설 <바이올렛>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재단의 1%기부에 동참하였으며, 이후 <J이야기> <리진> <엄마를 부탁해> 등의 소설로도 1% 기부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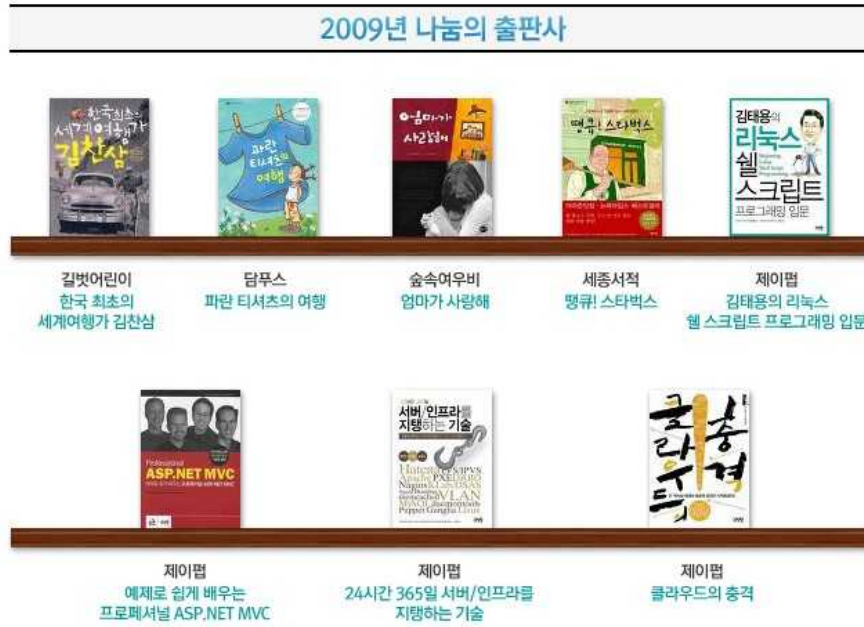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인세의 1%라니 기부라고도 할 수도 없는 적은 금액이라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닌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쓰임새가 있는 거 아닐까요. 미국의 자산가들이 어마어마한 기부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존경스럽습니다. 기부를 하는 저도 마음이 좋고요. 결국 기부는 누구보다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안도현 작가는 2007년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를 통해 인세 기부에 동참하였다. 출판사 문학동네와 작가 안도현은 100쇄 기념 1만부의 작가 인세와 출판사 수익금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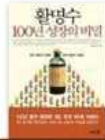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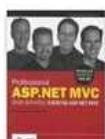






이러한 <나눔의 책>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170여명의 작가와 28개의 출판사가 기부에 동참하였으며, 총 기부금은 1억 1천 4백만 원 정도이다.

[그림 4] 아름다운재단 2009년 나눔의 책 참여 출판사



[그림 5] 아름다운재단 2009년 나눔의 책 참여 작가

2009년 나눔의 작가

				
김병용 열도라도 길 위의 풍경	김용택 창작과비평 수양버들	김이경 푸리와이파리 순례자의 책	김재민 김범어린이 한국 최초의 세계여행가 김산삼	김주영 동아E&D 신의 직장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
				
김태곤 비주얼라인 입하는 방식의 Re-Think	김태용 제이펍 김태용의 리눅스 셸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입문	박광수 갤리온 참서툰사람들	박경애 작은피앗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자란다	박홍이 넥스웍 5분간의 소인 허락된다면 마지막 쓰는 편지
				
신경숙 창작과비평 엄마를부탁해	신경숙 문학동네 깊은슬픔	신경숙 문학동네 리진	신경숙 문학동네 바이올렛	안철수 라젠 행복바이러스 안철수
				
예종석 리더스북 활명수 100년 성장의 비밀	함소아 한의원 예답friend 세상감기 평생건강 좌우한다	이유진 아이스토리 캐나다 영어유학 스텐다북	이해황 사피엔스21 언어의 기술	이해황 사피엔스21 2010학년도 수능 언어 모의평가 분석
				
장용준 북멘토 한국사카페	장헌희 제이펍 예제로 쉽게 배우는 프로페셔널 ASP.NET MVC	조명진 한빛미디어 뇌를 자극하는 PHP 프로그래밍	조성만 제이펍 프로페셔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진명조 제이펍 24시간 365일 서버/인프라를 지탱하는 기술
				
진명조 제이펍 클라우드의 흥겨	최정희, 류준희, 홍승환 토토북 구분형아저씨 착한 돈이 뭐예요	하승창 아르케 스타벅스보다 아름다운 북카페		

[그림 4, 5]자료 : 아름다운재단 공식 홈페이지

나. 그 외 사례

음원 저작권 기부인 경우 가수 이문세가 MBC 라디오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에서 청취자 3,000여명과 제작한 곡 <이 겨울이 날 지나간다>의 저작권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그 수익금을 갖게 한 것이 최초이다.

또한 故 법정스님이 생전 펴낸 30여 권 이상의 책과 10억 원 이상의 인세가 모두 기부된 사례가 있으며, 유명 소설가 공지영은 일본에서 출간된 대지진 관련 소설을 일본 대지진 수해 모금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 출판된 그녀의 책에 대한 인세 전부를 성금으로 기증한 것이었다.

유명인의 기부 사례의 경우, 한비야가 저서 <그것이 사랑이었네>로 인세 기부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인 1억 원은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에 쓰였다. 그녀는 인세기부에 대해 “책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고, 책을 읽은 독자들의 마음을 내가 대신 전달하는 기분”이라며 “부디 세계시민학교가 무럭무럭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세계시민학교를 위해 역할이 주어질 때 제대로 해내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V. 저작권 기부에 대한 제도 및 재단 형성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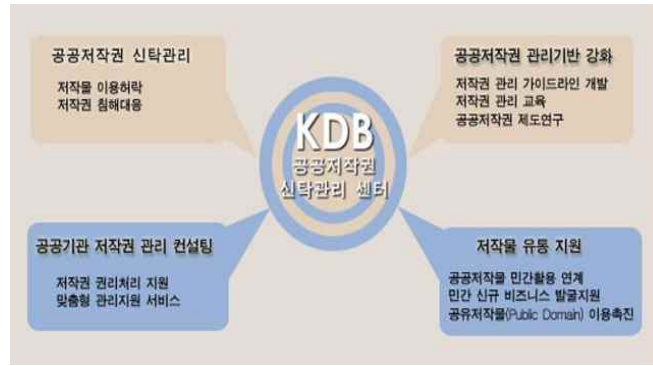
1. 저작권에 대한 현행 제도와 사회적 기업

가. 저작권 기부와 관련한 현행 제도

재능 기부는 기본적으로 재능을 가진 기부자가 재능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부자의 재능 기부를 중개해주는 시스템이나 중개기관 또는 단체의 존재가 중요시된다. 이러한 중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직접적으로 재능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능 기부가 성립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중개 기관의 활동 정도나 기획력에 따라서 재능 기부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 기부의 경우, 개인이 직접 수혜대상에 기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부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의 중개 기관 활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재능 기부보다 더 그 필요도가 절실하다.

때문에 우선 현재 정책 영역에서의 재능 기부 확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중개 시스템의 구축이나 중개 기관 또는 단체의 활용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정부기관이나 공공영역에서 스스로 이러한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저작권 기부의 경우, 문화재와 유물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탓에 현재 저작권 관리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림 6] 공공 저작권 신탁관리 센터 업무



자료 : 공공 저작권 신탁관리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그러한 인프라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있는 저작권 위탁관리 위원회는 KDB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 부설 공공 저작권 신탁관리 센터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료 저작물의 저작권을 민간에 유통, 대행 이용허락을 하는 등 전반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수익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리기준 및 방법과 제도 연구 등의 연구 사업 또한 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곳은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 음악 저작물, 회화·조각·공예·디자인 등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화, TV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제호, 2차적 저작물 등 전반적인 저작권의 대상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과 부수적인 항목을 전담한다.

저작권 위탁관리 위원회의 <공공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공 저작물 저작권 관리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저작물을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생산, 수집, 제공, 이용 등 공공 저작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공공 저작물 여부 판단, 저작권 권리관계 판단, 이용 허락 계약, 침해 및 구제 방안 등 필요한 저작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공공 저작물 저작권 관리’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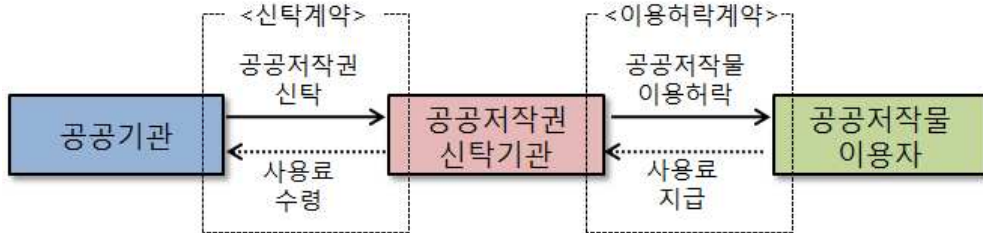
이들의 목표는 공공기관이 공공 저작물의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 저작물의 제공,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 저작물의 적법한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은 민간에서 공공 저작물이 활발하게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 저작물을 관리, 처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보장하는 이유를 그의 창작에 대하여 보상을 주어서 더 많은 창작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는 반면, 저작물은 문화적 유산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최근 공공 저작물의 민간 개방 추세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권자인 공공 저작물은 민간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각 공공기관의 공공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는 민간에서 공공 저작물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공 저작물 저작권 관리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 저작권을 통해 저작물을 사회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이를 통해 문화 산업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이것을 저작권 기부와 연계 시켜보면 공공 저작권의 수익이 국가로 반환되는 대신 수혜자가 기부된

저작권의 수익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저작물은 사회에 효과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 공공 저작권의 유통모델의 수혜자와 제공자를 바꾼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7] 공공 저작권 위탁 기관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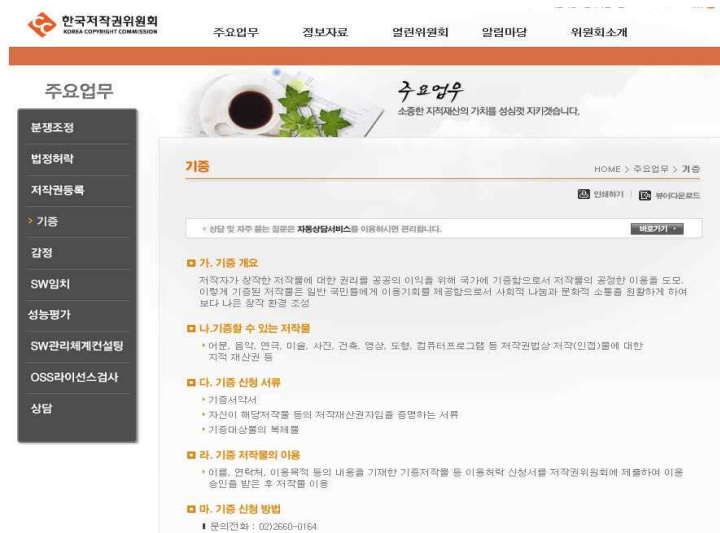
[그림 8] 기부 저작권 위탁 기관 모델



[그림 7, 8] 자료 : 공공 저작권 위탁관리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이는 공공 저작권 위탁위원회와 기본적으로 같은 베이스 모델을 가지면서 수익 구조만 변환한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효과적인 저작권 기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9]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기증 페이지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국가에 저작물 및 저작 인접권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기증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홍보 등의 부족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은 상태로, 활발히 활성화되어있지는 않다.

나. 사회적 기업 및 재단

최근 국내에서도 비정부기구(NGO) 또는 비영리단체(NPO)를 의미하는 제3섹터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독점하는 유럽형 복지국가모델이 경제위기나 복지재정 등의 압박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그에 따라 정부의 역할 전환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비정부기구(NGO) 또는 비영리단체(NPO)는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들을 시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의 부담을 덜고 보다 지속가능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창출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활동은 현재 미약한 수준이다. 국내 사회적 기업 중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앞서 언급한 아름다운재단의 프로그램 정도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부재와 정책적 저작권 기부 의 홍보 부족으로 현재 다수의 문화예술인은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중 문화예술인들을 정책적으로 재능 기부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양산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보다는 재능 기부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개발하여 재능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2. 저작권 관련 재단의 해외 사례

가.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은 1987년 앤디워홀의 유언에 따라 시각 예술의 발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은 시각 예술계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조직을 후

- 6) 제1섹터(1st sector)인 공공 부문과 제2섹터(2nd sector)인 민간 부문의 공통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본래 제3섹터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부문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설립한 특수법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며,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레빗(Theodore Levitt)은 The Third Sector: New Tactics for a Responsive Society(1973)에서 제3섹터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양측에서 외면당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된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에치오니(Amitai Etzioni)로 대표되는 수렴(convergence)적 입장은 제3섹터를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의 공익이나 책임성과 결합시키려는 메커니즘으로 파악한다. 제3섹터의 등장에 대해 대부분의 논자들은 전통적 관료제는 실패했으므로 정부는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체와 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주체를 구분하고 공공 활동에 관여하는 민간 부문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학 사전』, 이종수 저, 대영문화사, 2009. 01. 15.
- 7)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論)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 즉, ‘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저, 새정보미디어, 2010. 03. 25.

원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시각예술계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현대 예술과 전시를 후원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한다.

또한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은 작가의 작품 연구와 작가 혹은 작품이 언급되는 모든 인쇄물, 부가 가치 상품 등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한다. 재단은 앤디 워홀의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하고 작가의 작품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정해 주는 활동으로 재단의 자금을 형성한다. 저작권 수익료는 재단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통해 많은 문화 산업과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활동으로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은 앤디워홀의 작품을 위주로 한 전시, 학예 연구, 시각 예술 프로그래밍, 시각예술 단체 조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타 문화권의 시각예술 작업을 후원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시각 예술 문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림 10] The Andy Warhol Foundation
Year Anniversary Report 문화 지원 금액

Total	Admin. and General	Program Activities	Investment Activities	Artworks and Related Activities	Royalties and Licensing	Estate and Other Extra Ordinary Matters
\$ 4,344,664	\$ -	\$ -	\$ 4,344,664	\$ -	\$ -	\$ -
2,173,707	-	-	-	-	2,173,707	-
47,656	-	1,000	39,877	-	-	6,779
6,566,027	-	1,000	4,384,541	-	2,173,707	6,779
9,619,280	-	9,619,280	-	-	-	-
1,992,324	70,297	745,516	107,191	721,744	334,388	13,188
904,502	31,914	338,460	48,664	327,667	151,810	5,987
151,667	7,583	45,500	22,750	45,500	30,334	-
174,620	24,125	5,456	762	34,042	110,235	-
137,686	13,768	27,537	41,306	34,422	20,653	-
36,376	-	27,325	-	9,051	-	-
52,753	-	-	-	52,753	-	-
344,350	-	-	-	344,350	-	-
4,744	-	-	-	4,744	-	-
212,276	3,320	10,479	8,524	162,212	7,450	291
209,337	8,645	118,616	1,623	43,375	37,078	-
184,000	-	-	125,120	-	58,880	-
389,813	-	-	-	389,813	-	-
19,914	-	-	-	19,914	-	-
181,784	23,412	67,828	5,998	53,751	29,995	800
11,521	-	-	-	-	11,521	-
223,212	22,321	86,038	7,610	68,181	38,047	1,015
18,100	-	18,100	-	-	-	-
54,293	-	-	-	54,293	-	-
75,315	7,532	15,063	26,360	18,828	7,532	-
32,221	3,223	12,420	1,098	9,842	5,492	148
30,045	3,005	11,581	1,024	9,177	5,121	137
1,500	1,500	-	-	-	-	-
1,069	-	-	1,069	-	-	-
5,443,422	220,645	1,529,919	399,099	2,423,659	848,536	21,564
15,062,702	220,645	11,149,199	399,099	2,423,659	848,536	21,564
(8,496,675)	(220,645)	(11,148,199)	3,985,442	(2,423,659)	1,325,171	(14,785)
4,192,109	-	-	4,192,109	-	-	-
19,301,353	-	-	19,301,353	-	-	-
(580,810)	-	-	(580,810)	-	-	-
16,251,949	-	-	16,251,949	-	-	-
(1,664,967)	-	-	-	(1,664,967)	-	-
(1,515)	-	-	-	-	-	(1,515)
\$29,021,444	\$ (220,645)	\$(11,148,199)	\$26,918,094	\$12,163,323	\$ 1,325,171	\$ (16,300)

[그림 11] The Andy Warhol Foundation Year Anniversary Report 문화 지원 금액

Statement of Activities		
(Modified Cash Basis)		
	Year Ended April 30, 2006	Year Ended April 30, 2005
Revenue		
Interest and dividends	\$ 4,344,664	\$ 3,720,446
Royalties and licensing fees	2,173,707	1,956,228
Other	47,656	17,468
Total revenue	6,566,027	5,694,142
Expenditures		
Grants authorized — net (notes 1 and 5)	9,619,280	2,438,030
Administrative and general		
Payroll and related expenses (note 4)	2,896,826	2,781,697
Directors' fees	151,667	139,167
Legal and accounting fees	312,306	379,134
Consulting fees	36,376	16,471
Curatorial and conservation expenses	397,103	288,910
Appraisal fees	4,744	4,525
Insurance	212,276	258,534
Meetings and travel	209,337	172,296
Federal excise tax (note 3)	184,000	116,000
Art storage and related expenses (note 5)	409,727	396,969
Office expenses	181,784	155,615
Licensing expenses	11,521	80,579
Rent (note 5)	223,212	176,643
Catalogue Raisonné (note 5)	18,100	18,991
Other (see page 12)	194,443	257,115
Total administrative and general	5,443,422	5,242,646
Total expenditures	15,062,702	7,680,676
(Deficiency) of revenue to cover expenditures before other additions (deductions)	(8,496,675)	(1,986,534)
Other additions (deductions)		
Net gain on sale of investments	4,192,109	2,198,574
Net unrealized gain on investments (note 1)	19,301,353	2,489,051
Investment advisory fees	(560,810)	(551,736)
Net gain on sale of artworks	16,251,949	12,646,322
Commissions on sale of artworks (note 5)	(1,664,967)	(1,393,196)
Expenses relating to the Estate of Andy Warhol (note 5)	(1,515)	(1,636)
Increase in unrestricted net assets	29,021,444	13,400,845
Unrestricted net assets, beginning of year	172,567,127	159,166,282
Unrestricted net assets, end of year	\$ 201,588,571	\$ 172,567,127

[그림 10, 11] 자료 : The Andy Warhol Foundation 공식 홈페이지

나. Getty Foundation

Getty Foundation은 미국의 컬렉터였던 J. Paul Getty 의 소장품과 박물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재단이다. J. Paul Getty 의 컬렉션은 초창기 장식 예술과 앤틱 가구들로 이루어졌으며 1954년 J. Paul Getty 박물관이 세워지면서부터 고대 로마 조각과 같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컬렉션에 포함되었다.

시각예술 문화의 증진에 대해 보다 나은 기여를 위해 J. Paul Getty 의 개인적 자산은 1982년에 대부분 신탁에 맡겨진다. 이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박물관의 확장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The Grant Program은 1980년에 설립되고 이 중 The Grant Program은 2005년 Getty Foundation으로 다시 설립된다.

여러 프로그램과 지원금으로 Getty Foundation 은 미술사 연구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다. 또한 미술품 보존과 미술관에 보존되어있는 아카이브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높이고 미래 시각 예술계를 이끌어갈 예술가 발굴과 양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Getty foundation은 이러한 활동을 Paul Getty Museum,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The Getty Conservation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Getty 박물관, 연구기관, 보존기관을 통해 Getty foundation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최대한의 성과를 얻도록 지원한다.

Getty Foundation은 소장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작품 대여와 부가 가치, 로열티(Royalty)를 바탕으로 재단의 수입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재단은 박물관 아카이브 개방, 문화 예술 프로그램 지원, 시각 예술 문화 활동 지원 등의 사회 환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그림 12] 2009 Getty Foundation 회계 보고 대차대조표

Form **990-PF** Return of Private Foundation or Section 4947(a)(1) Nonexempt Charitable Trust Treated as a Private Foundation OMB No. 1545-0052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Note: The foundation may be able to use a copy of this return to satisfy state reporting requirements. **2009**

For calendar year 2009, or tax year beginning 07/01, 2009, and ending 06/30, 2010

G Check all that apply: Initial return Initial return of a former public charity Final return
 Amended return Address change Name change

Name of foundation: **THE J. PAUL GETTY TRUST** A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95-1790021**
 Number and street (or P.O. box number if mail is not delivered to street address) Room/suite: B Telephone number (see page 10 of the instructions):
1200 GETTY CENTER DRIVE, SUITE 401 (310) 440-6040
 City or town, state, and ZIP code: **LOS ANGELES, CA 90049**

H Check type of organization: Section 501(c)(3) exempt private foundation
 Section 4947(a)(1) nonexempt charitable trust Other taxable private foundation

I Fair market value of all assets at end of year (from Part II, col. (c), line 16) ▶ \$ **9,584,879,219.** J Accounting method: Cash Accrual
 (Part I, column (d) must be on cash basis.)

Part I Analysis of Revenue and Expenses (The total of amounts in columns (b), (c), and (d) may not necessarily equal the amounts in column (a) (see page 11 of the instructions).)

	(a) Revenue and expenses per books	(b) Net investment income	(c) Adjusted net income	(d) Disbursements for charitable purposes (cash basis only)
1 Contributions, gifts, grants, etc. received (attach schedule)	5,172,069.			
2 Check <input type="checkbox"/> If the foundation is not required to attach Sch. B				
3 Interest on savings and temporary cash investments	256,597.	256,597.	256,597.	
4 Dividends and interest from securities	20,798,870.	15,984,789.	20,075,617.	ATCH 1
5a Gross rents	324,250.	324,250.	324,250.	
b Net rental income or (loss)	201,954.			
6a Net gain or (loss) from sale of assets not on line 10	114,482,464.			
b Gross sales price for all assets on line 6a	1,705,532,086.			
7 Capital gain net income (from Part IV, line 2)		79,236,189.		
8 Net short-term capital gain			68,958,321.	
9 Income modifications			47,375.	
10a Gross sales less returns and allowances	17,174,331.			ATCH 2
b Less: Cost of goods sold	9,272,456.			
c Gross profit or (loss) (attach schedule)	7,901,875.		7,901,873.	
11 Other income (attach schedule)	31,492,329.	59,605,084.	62,097,576.	ATCH 3
12 Total. Add lines 1 through 11	180,428,454.	155,406,909.	159,661,609.	
13 Compensation of officers, directors, trustees, etc.	4,255,672.	1,324,829.	1,509,902.	3,978,051.
14 Other employee salaries and wages	75,969,618.	161,549.	1,666,080.	73,071,257.
15 Pension plans, employee benefits	32,821,476.	579,688.	1,217,358.	31,604,118.
16a Legal fees (attach schedule) ATCH 4	1,961,543.	84,285.	90,576.	1,870,967.
b Accounting fees (attach schedule) ATCH 5	494,294.	223,033.	415,874.	78,420.
c Other professional fees (attach schedule)	6,306,308.	6,286,708.	6,286,708.	19,600.
17 Interest ATTACHMENT 7	26,853,773.	0.	26,853,773.	0.
18 Taxes (attach schedule) (see page 14 of the instructions)	940,777.	0.	629,646.	311,131.
19 Depreciation (attach schedule) and depletion	47,345,315.	44,626.	117,999.	
20 Occupancy	11,377,200.	9,719.	2,414,249.	8,962,951.
21 Travel, conferences, and meetings	4,642,826.	79,234.	459,757.	4,183,069.
22 Printing and publications	1,358,743.	4,945.	60,098.	1,298,645.
23 Other expenses (attach schedule) ATCH 9	48,591,596.	59,104,632.	72,206,146.	41,593,462.
24 Total operat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dd lines 13 through 23	262,919,141.	67,903,248.	113,928,166.	166,971,671.
25 Contributions, gifts, grants paid	16,567,539.			13,210,658.
26 Total expenses and disbursements. Add lines 24 and 25	279,486,680.	67,903,248.	113,928,166.	180,182,329.
27 Subtract line 26 from line 12:				
a Excess of revenue over expenses and disbursements	-99,058,226.			
b Net investment income (if negative, enter -0-)		87,503,661.		
c Adjusted net income (if negative, enter -0-)			45,733,443.	

For Privacy Act and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see page 30 of the instructions. * ATCH 6 JSA ** ATCH 8 Form 990-PF (2009)
 SE 14102000 KL4408 1639 V 09-9.3 562005 PAGE 1

[그림 13] 2010 Getty Foundation 회계 보고 대차대조표

Form 990-PF Return of Private Foundation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Note: The foundation may be able to use a copy of this return to satisfy state reporting requirements.
 OMB No. 1545-0052
2010
 For calendar year 2010, or tax year beginning 2010, and ending 2010
 G Check all that apply: Initial return Initial return of a former public charity Final return
 Amended return Address change Name change

Name of foundation: **THE POETRY FOUNDATION**
 A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36 2490808**

Number and street (or P.O. box number if mail is not delivered to street address): **61 WEST SUPERIOR STREET**
 Room/suite: _____
 B Telephone number (see page 10 of the instructions): **(312) 787-7070**

City or town, state, and ZIP code: **CHICAGO, IL 60654**
 C If exemption application is pending, check here
 D 1. Foreign organizations, check here
 2. Foreign organizations meeting the 85% test, check here and attach computation
 E If private foundation status was terminated under section 507(b)(1)(A), check here
 F If the foundation is in a 60-month termination under section 507(b)(1)(B), check here

H Check type of organization: Section 501(c)(3) exempt private foundation
 Section 4947(a)(1) nonexempt charitable trust Other taxable private foundation

I Fair market value of all assets at end of year (from Part II, col. (c), line 16) ▶ \$ **207,613,718.**
 J Accounting method: Cash Accrual
 Other (specify) _____ (Part I, column (d) must be on cash basis)

Part I Analysis of Revenue and Expenses (The total of amounts in columns (b), (c), and (d) may not necessarily equal the amounts in column (a) (see page 11 of the instructions).)

	(a) Revenue and expenses per books	(b) Net investment income	(c) Adjusted net income	(d) Disbursements for charitable purposes (cash basis only)
Revenue				
1 Contributions, gifts, grants, etc., received (attach schedule)	1,080,078.			
2 Check <input type="checkbox"/> if the foundation is not required to attach Sch. B				
3 Interest on savings and temporary cash investments	45,014.	45,014.	45,014.	
4 Dividends and interest from securities	2,189,154.	2,189,154.	2,189,154.	
5a Gross rents				
b Net rental income or (loss)				
6a Net gain or (loss) from sale of assets not on line 10	-341,919.			
b Gross sales price for all assets on line 6a	6,154,856.			
7 Capital gain net income (from Part IV, line 2)				
8 Net short-term capital gain			465,974.	
9 Income modifications				
10a Gross sales less returns and allowances				
b Less: Cost of goods sold				
c Gross profit or (loss) (attach schedule)				
11 Other income (attach schedule)	656,018.	33,864.	636,408.	ATCH 1
12 Total. Add lines 1 through 11	3,628,345.	2,268,032.	3,336,550.	
Operat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13 Compensation of officers, directors, trustees, etc.	521,912.	111,205.	111,205.	410,708.
14 Other employee salaries and wages	1,020,869.	8,000.	8,000.	1,017,677.
15 Pension plans, employee benefits	503,520.	11,121.	11,121.	492,150.
16a Legal fees (attach schedule) ATCH 2	86,795.	8,680.	8,680.	78,792.
b Accounting fees (attach schedule) ATCH 3	70,701.	0.	0.	70,701.
c Other professional fees (attach schedule)	665,536.	0.	0.	703,001.
17 Interest				
18 Taxes (attach schedule) (see page 14 of the instructions)	99,839.	0.	0.	142,275.
19 Depreciation (attach schedule) and depletion	147,671.	1,385.	1,385.	
20 Occupancy	448,691.	11,532.	11,532.	508,905.
21 Travel, conferences, and meetings	397,576.	0.	0.	419,858.
22 Printing and publications	1,014,515.	0.	458,164.	686,479.
23 Other expenses (attach schedule) ATCH 6	934,173.	293,581.	256,107.	492,311.
24 Total operat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dd lines 13 through 23	5,911,798.	445,504.	866,194.	5,022,857.
25 Contributions, gifts, grants paid	725,194.			0.
26 Total expenses and disbursements. Add lines 24 and 25	6,636,992.	445,504.	866,194.	5,022,857.
27 Subtract line 26 from line 12:				
a Excess of revenue over expenses and disbursements	-3,008,647.			
b Net investment income (if negative, enter -0-)		1,822,528.		
c Adjusted net income (if negative, enter -0-)			2,470,356.	

[그림 14] 2009 Getty Foundation 대차 대조표 attachment 3 추가 수입 로열티

THE J. PAUL GETTY TRUST

95-1790021

ATTACHMENT 3

FORM 990PF, PART I - OTHER INCOME

DESCRIPTION	REVENUE AND EXPENSES PER BOOKS	NET INVESTMENT INCOME	ADJUSTED NET INCOME
LEADERSHIP INSTITUTION	165,955.		165,955.
TICKETED PERFORMANCES	234,682.		234,682.
MUSEUM EDUCATION CLASSES	112,209.		112,209.
ROYALTIES	658,010.		658,010.
AUDIOGUIDE RENTAL	260,100.		260,100.
EDUCATIONAL EVENTS	118,685.		118,685.
PHOTO SALES	100,080.		100,080.
OTHER PROGRAM SERVICE REVENUE	167,328.		167,328.
PARKING FEES	6,856,538.		6,856,538.
EMPLOYEE MORTGAGE INTEREST	747.		747.
LIMITED PARTNERSHIP INCOME	22,817,995.	59,605,084.	53,423,242.
TOTALS	<u>31,492,329.</u>	<u>59,605,084.</u>	<u>62,097,576.</u>

[그림 15] 2010 Getty Foundation 대차 대조표 attachment 1 추가 수입 로열티

ATTACHMENT 1

FORM 990PF, PART I - OTHER INCOME

DESCRIPTION	REVENUE AND EXPENSES PER BOOKS	NET INVESTMENT INCOME	ADJUSTED NET INCOME
EARNED SUBSCRIPTION	544,568.	0.	544,568.
SINGLE COPY SALE INCOME	3,558.	0.	3,558.
DISTRIBUTOR GROSS SALE INCOME	48,672.	0.	48,672.
ADVERTISING REVENUE	31,043.	0.	31,043.
ROYALTY REVENUE	4,429.	4,429.	4,429.
WEB REFERRALS	173.	0.	173.
MISCELLANEOUS REVENUE	3,965.	0.	3,965.
TAX REFUND	13,731.	0.	0.
EXCLUDE K-1 UBI LOSS	0.	23,556.	0.
ORDINARY BUSINESS LOSS FROM K-1S	-15,880.	-15,880.	0.
NET RENTAL INCOME FROM K-1S	655.	655.	0.
ROYALTY INCOME FROM K-1S	4,081.	4,081.	0.
NET SEC.1231 GAIN FROM K-1S	2,093.	2,093.	0.
OTHER INCOME FROM K-1S	14,930.	14,930.	0.
TOTALS	<u>656,018.</u>	<u>33,864.</u>	<u>636,408.</u>

96520M 649R

0171582

PAGE 23

ATTACHMENT 1

[그림 12, 13, 14, 15] 자료 : Getty Foundation 공식 홈페이지

다. Poetry Foundation

Poetry Foundation은 시 문화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 시카고의 재단이다. 이는 2003년 자선가 루스 릴리의 2억 달러 기부를 통해 형성되었고 잡지사를 창립하여 문화 재단을 형성하였다. Poetry Foundation는 가능한 한 많은 독자들에게 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의 성격은 미국 지정 501 (C) (3) 비영리 단체로 기부는 세금 공제로 이루어진다. 이 재

단은 기본적으로 잡지사에서 발행되는 시에 대한 저작권의 수입을 담당한다. 이들은 재단에 수록되어 있는 시를 통한 인세, 저작권료를 통한 수입으로 재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사회 환원적인 프로그램, 시 낭송대회, 시 창작 지원금 등을 기부한다.

3. 국내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국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기부 관련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작권을 국가에 기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부된 저작권을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저작물로 만듦으로써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기부는 앞서 설명한 저작권 기부의 이점을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할뿐더러, 현재는 이마저도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 기부 관련 시스템은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그 역할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 재단 사례의 동하여, 이러한 재단들 내에서 아름다운재단의 1% 기금과 마찬가지로 로열티 및 라이선싱(Royalty and Licensing)이 전체 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것이 다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사회적 환원으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 기부는 경제적으로 실효성을 지니는데, 이는 현재 스테디셀러로서 많이 읽혀지는 대부분의 문학 작품이 일제 강점기 전후(前後)에 쓰여져 아직까지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과도 잘 맞는다. 또한 음악의 경우 CD보다는 음원 이용이 많고, 이에 대한 2차적 가공과 사용이 활발한 우리나라 음악 시장의 특성상 저작권 수익 이동이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국내 작가나 가요 협회를 기반으로 한 재단 형성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문화예술분야의 기부 문화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소비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앞서 우리는 재능 기부의 정의와 확산 추세, 사례, 그리고 사회적 효과를 들어 이를 저작권 기부와 비교함으로써 저작권 기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이점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정책 및 제도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저작권 기부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았으며, 국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기부 관련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외 재단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저작권 기부를 비정부기구(NGO) 또는 비영리단체(NPO)에 접목시켜야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실정을 살펴봄으로써 저작권 기부가 문화예술분야의 새로운 기부 문화로서 국내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저작권 기부는 기존의 문화예술 기부 형태와 재능 기부에 더하여 더 많은 이점과 가능성을 지니며, 그 실현성 또한 높다. 이와 같은 기부 문화가 국내에 자리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분야 진흥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예술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 박소현 저,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오승종 저,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홍익대학교 출판부, 2006.
유일상 저,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사회평론, 2010.
위클리 경향 894호 [특집]재능 기부 우리 곁에 '성큼', 최영진 기자, 2010.
이종수 저, 『행정학 사전』, 대영문화사, 2009.
이철수 저, 『사회복지학 사전』, 블루피쉬, 2009.
최영목 저,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논형, 2009.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저,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2010.
한국콘텐츠진흥원 저, 『2009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공공 저작권 신탁관리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재능 기부 블로그 페이지

(<http://section.blog.naver.com/talentedonation/TalentDonationTotalList.nhn>)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

The Andy Warhol Foundation 공식 홈페이지(<http://www.warholfoundation.org/>)